

동의서

일자 : 201__년 __월 __일

수신1 : (주)데일리펀딩대부(대주의 지위)

수신2 : (주)(업무대행용역계약상 수탁자의 지위)

제목 : 업무대행용역계약상 계약상 지위 이전 관련

이 동의서는, 위탁자로서 본인과 수탁자로서 (주) 사이에 체결된 2018년 6 월 1일자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업무대행용역계약”)과 관련됩니다.

주식회사(이하 문맥에 따라 “차주” 또는 “채무자”)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월에 1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 ②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월에 2단지 연립주택 신축공사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데일리 펀딩대부(이하 “대주”) 등과 2018년 7월 28일 대출약정금 한도 금 오십억원 (₩5,000,000,000)의 대출약정(이하 “대출약정”) 및 업무대행수탁자지위이전계약(서)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업무대행용역계약상 위탁자로서,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주의 통지가 있는 경우, 업무대행용역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대주 또는 대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인수인”)에게 이전하는데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또한,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승계계약 체결 등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동의서를 통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7조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가칭)아라동 1단지
추진위원장 양

(가칭)아라동 2단지
추진위원장 김